논리연구 13-2(2010) pp. 61~82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 †

송 하 석

【요약문】 X가 참(거짓)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지전제로부터 X는 거짓(참)이라는 지식결론을 추론하는 논증을 일반적으로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고 하는데, 코피 등을 비롯한 많은 논리학자들은 이를 오류 논증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지로부터의 논증처럼 보이지만 오류 논증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받아들일 만한 논증은 사실은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아니고, 조건적 지식전제가 암암리에 포함된 논증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주장에 반대해서 모든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암암리에 조건적 지식전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모든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다 오류는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무지로부터의 논증 형식을 지닌 논증 중에서 오류논증과 그렇지 않은 논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실천논증의 경우, 사회적 맥락이 오류논증과 설득력 있는 논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임을 논증한다.

【주요어】 증명 부담의 원칙, 결여된 지식으로부터의 논증, 증거부재로부터의 논증, 실천논증, 코피, 월톤.

---

* 접수완료: 2010. 6. 23. 심사 및 수정완료: 2010. 7. 19. 게재 확정일: 2010. 7. 29.
† 이 논문의 초고는 2009년 논리학회 정기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토론에 참여하고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또한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1. 들어가는 말

미국의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EU는 유전자 변형(GMO) 식품의 수입을 둘러싸고 미국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간주해야 하고, 따라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상품에 그러한 사실을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EU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한 상품에 유전자 변형 식품이 그 원료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심각한 무역 분쟁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미국 측의 논증이나 우리나라와 일본, EU의 논증에는 모두 소위, "무지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ignorance)"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측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1. (전제)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2. (1로부터) GMO 식품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추정된다.
3. (숨은 전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추정되는 식품은 그 제조 원료에 대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4. (결론) GMO 식품에 대해서 그 제조 원료에 대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1. (전제)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2. (1로부터) GMO 식품은 인체에 해롭다고 추정해야 한다.
3. (숨은 전제) 인체에 해롭다고 추정되는 식품은 그 제조 원료를

표기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결론) GMO 식품에 대해서 그 제조 원료에 대해서 표기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두 논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에서 첫 번째 전제에서 두 번째 주장으로의 논증이 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다.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논증의 첫 번째 전제는 모두 참이다. 그러나 결론은 서로 모순적이므로, 우리는 두 논증 중 적어도 하나는 거부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들 중 어떤 논증이 더 설득력 있다고 해야 하는가? 또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두 논증 모두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논증이라고 거부해야 하는 것일까?

2. 무지로부터의 논증에 대한 역사적 논의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로크(J. Locke)의 저술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크는 논쟁적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 내거나 상대방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네 가지 종류의 논증을 제시하는데, 이 중 하나가 '무지로부터의 논증(argumentum ad ignorantiam)'이다. 로크는 이 논증을 대화에 참여한 한 쪽이 어떤 주장에 대한 증거를 구성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든지, 반대논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로크에 따르면, 이 논증은 대화 상황에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설득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 물론 로크도 이 논증이 오류인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논증이 모두 오류라고 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1]

또한 비형식적 오류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적 논박>에도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오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피카>에서 "불가능한 것에 의한 추론"에서 부분적으로 이 논증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다.

> 많은 경우에 참이고, 전체적으로 반론이 없거나 혹은 전체에 걸쳐서 쭉 훑어본 것만으로는 표면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들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명제가 이러이러한 참이 아니라는 사례들을 볼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 명제를 참으로 승인하기 때문이다.[2]

이 구절은 오늘날 귀류법 논증이라고 알려진 논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참이 아니라는 사례를 볼 수 없는 경우는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승인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주장에 대한 반대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 주장을 수용할 만한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그는 논증의 전략으로써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지로부터의 논증을 오류 논증이라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설득을 위한 대화의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에서 볼 수 있듯이,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전통적으로 일종의 설득을 위한 대화의 기법으로 인정되었지, 일반적으로 오류 논증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비형식적 논리학의 교재 대부분은 무지로부터의 논증을 오

---

1) Locke (1975), p. 686. 로크의 '무지로부터의 논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Hamblin (1970), pp. 159-161을 참고할 것.

2) Aristotle, <Topica>, 158a3~5. 번역은 김재홍의 『변증론』, p. 325에서 따옴.

류라고 쓰고 있다. 왜 그런 평가를 하게 되었을까?

3. 무지로부터의 논증과 증명 부담의 원칙

무지로부터의 논증을 형식화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FI-1) X가 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X는 거짓이다. (not-X는 참이다.)

또는

(AFI-2) X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X는 참이다.

요컨대 "~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지 전제(ignorance premise)로부터 "~임은 참이다"는 지식 결론(knowledge conclusion)으로의 추론 형식을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고 한다. 논리학 교과서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코피(I. Copi)의 『논리학 개론』은 무지로터의 논증을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논증"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논증을 오류 논증에 포함시킨다.[3] 물론 무지 전제로부터 지식 결론을 추론하는 위와 같은 형식의 논증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식의 논증 중에는 연역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지만, 설득력 있는 논증이 있다.

코피도 무지로부터의 논증의 형식을 취하지만 예외적으로 받아

3) I. Copi, (1972), pp. 76-77. 상당히 많은 논리학자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J. Adl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의 김광수도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다. Adler(1998)와 김광수(1995)를 참고.

들일 만한 특별한 경우의 논증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법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떤 피의자가 유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는 무죄라고 논증하는 경우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코피는 그 이외의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모두 오류 논증이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오류 논증임을 보이는 유명한 예로 초경험적 현상이나 초경험적 대상의 존재와 관련된 논증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초월적인 신의 존재, 텔레파시 현상에 관한 논증이 그것이다. 즉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식의 논증이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는 형식의 논증을 오류 논증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로부터의 논증으로 제시하는 유명한 예 중 하나가 바로 맥카시 케이스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이 논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증1)
국무성의 직원 중,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되는 81명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40명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이 논증이 오류 논증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모두 오류인가? 다음 논증을 보자.

(논증2)
FBI의 조사 결과 X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X 씨는 간첩이 아니다.

이 논증도 무지 전제로부터 지식 결론을 추론한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다. 그러나 이 논증은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무지로부터의 논증의 형식을 취하지만 설득력 있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많은 논증이 있다. 특히 과학적 탐구에서 부정적 증거(negative evidence)로부터의 추론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드물지 않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탐구에서는 증거의 부재(무지 전제)로부터 긍정적인 결론(지식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일상적으로 그 증거가 관찰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 논증을 보자.

> (논증3)
>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발광하는 에테르를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므로 발광하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

이 논증은 과학자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발광 에테르의 존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 즉 부정적 증거로부터, 발광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식 결론을 주장하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의 일종이다. 그렇지만 이 논증은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간주된다.

최근 컴퓨터 공학에서도 이와 같은 부정적 증거로부터의 추론에 해당하는, 결여된 지식으로부터의 추론(lack-of-knowledge inference)을 설득력 있는 추론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지리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입력된 프로그램에 '남미의 가이아나 공화국은 고무의 주요 생산국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남미는 물론 전 세계의 지하자원 분포에 대한 자세한 정

4) 박은진, 김희정, p. 179.

보를 가지고 있어서, 남미의 페루와 콜롬비아는 고무의 주요 생산국이라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가이아나 공화국이 고무 생산국이라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자. 우리는 만약 어떤 나라가 고무의 주요 생산국이라면 그 프로그램은 그 사실을 알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대답으로부터 가이아나 공화국은 고무의 주요 생산국이 아니라고 추론할 것이고, 이 추론은 설득력 있는 추론이다. 이 추론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정보, 정확히 말해서 가이아나 공화국이 고무의 주요 생산국인지 알 수 없다는 부정적 증거로부터, 우리는 가이아나 공화국이 고무의 주요 생산국이 아닐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종의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다.

그리고 인문학인 역사학에서도 부정적 증거로부터의 지식 결론의 추론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로마에 관한 역사서 어디에서도 죽은 사람에게 훈장을 추증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로마에서는 훈장을 죽은 사람에게 추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논증을 흔히 "증거 부재로부터의 논증(ex silentio argument)"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간주된다.

코피도 그러한 논증들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논증2)는 코피 자신이 설득력 있는 논증이라고 제시한 예이다.[5] 그러나 코피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순수하게 무지 전제만을 사용하여 지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인데, (논증2)를 비롯해서 위에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는 제시된 논증들은, 무지 전제 이외의 지식 전제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쟁점은 무지로부터의 논증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와 무지로부터의 논증 중에서 오

5) I. Copi, 앞의 책, p. 77.

류 논증과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코피와 아들러(J. Adler)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모두 오류이고,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순수하게 무지 전제만을 사용하는 논증이라고 답한다. 반면에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는 모든 논증을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고 보고,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모두 오류 논증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로빈슨(R. Robinson), 크라브(E. Krabbe), 월톤(D. Walton) 등이다.

전자의 견해를 취할 경우, 문제는 형식적으로 무지로부터의 논증이지만 어떤 논증은 순수하게 무지의 전제만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논증은 암묵적으로 지식 전제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예컨대 (논증1)은 순수하게 무지 전제만을 이용하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만, (논증2)는 무지 전제 이외에 암묵적인 지식 전제를 사용하고 있어 순수한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논증2)가 암묵적인 지식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논증을 재구성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논증2')
1. (전제) FBI의 조사 결과 X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숨은 전제) X 씨가 간첩이라면, FBI의 조사는 X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찾아냈을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X 씨는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논증의 두 번째 전제는 일종의 지식 전제이다. 코피에 따르면, (논증2)는 이렇게 암묵적인 지식전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증2)가 설득력 있는 논증인 이유는 지식 전제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논증2')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왜 이런 재구성이 (논증1)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가? 두 논증의 차이는 (논증2)에서는 FBI의 조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논증1)에서는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증1)에 그러한 전제를 보충하면 그것은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되는가?

(논증1')
1. (전제) FBI가 국무성의 직원 중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되는 81명을 조사했지만, 그 중 40명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2. (숨은 전제)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FBI의 조사는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그들은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이렇게 (논증1)에 지식 전제를 보충하여 재구성한 (논증1')도 여전히 (논증2')과 달리 설득력이 없다. 결국 무지로부터의 논증 형식을 취하는 모든 논증에 원칙적으로 지식 전제를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식 전제를 숨은 전제로 갖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 논증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무지로부터의 논증의 일반적 형식을 취하는 논증 중에서 어떤 것은 지식 전제가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설득력 있는 논증이고, 다른 어떤 것은 순수하게 무지 전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류 논증이라는 코피의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6]

---

6) 코피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아마 (논증2')에 보충된 숨은 전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논증1')에 보충된 숨은 전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필자도 코피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순수하게 무지 전제만을 갖는 논증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

결국 가능한 선택지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의 일반적 형식, (AFI-1)과 (AFI-2)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논증은 모두 무지로부터의 논증이고, 그 중에는 설득력 있는 논증도 있고 오류 논증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러한 논증 중에서 어떤 것은 설득력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오류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모두 일종의 지식 전제인 조건적 전제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는 논증이다.

(AFI-1')
1. (무지 전제) X가 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증명되지) 않았다.
2. (조건적 전제) X가 참이라면, X가 참임이 알려질(증명될) 것이다.
3. (지식 결론) 그러므로 X는 거짓이다. (not-X는 참이다.)

또는

(AFI-2')
1. (무지 전제) X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증명되지) 않았다.
2. (조건적 전제) X가 거짓이라면, X가 거짓임이 알려질(증명될) 것이다.
3. (지식 결론) 그러므로 X는 참이다.

그렇다고 조건적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후건부정식의 타당한 연역논증이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건적 전제는 반사실적 조건문도 아니고, 실질 함축의 조건문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건적 전제가 반사실적 조건문이라면, 실제로 X가 참이

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아니라는 것[또는 X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론을 이미 전제에 포함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조건적 전제는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건적 전제는 "X가 참이라면, 아마도 X가 참이라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추정적 조건문으로 이해해야 한다.[7]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된 논증은, 무지 전제와 조건적 전제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귀납 논증이다.

그러면 이러한 논증 중에서 어떤 것은 설득력 있고 어떤 것은 오류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 중 하나는 X와 ~X, 어느 한 쪽에 강한 추정(strong presumption)이 부여될 수 있는가이다. 만약 X와 ~X 중 어느 한 쪽에 강한 추정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강한 추정이 부여되는 쪽은 부정적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부담을 지니게 된다. 다음 대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갑: X이다.
을: 왜 X인가?
갑: ① 왜 X가 아닌가?
② X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지지(증명되지) 않았다.[8]

---

7) 조건적 전제를 형식화 하면, "X → ◇K(X)"이다. (여기서 후건은 'X가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를 뜻함.) 그러니까 재구성된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K(X), X → ◇K(X) / ~X"의 형식이다. 그런데 ~K(X)는 ◇K(X)의 부정이 아니므로 이 논증은 타당한 후건부정식이라고 할 수 없다.

8) 이 대화 상황은 월톤의 글에서 빌린 것이다. 월톤은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대화의 소묘(profiles of dialogue)라고 부른다. D. Walton (1996), p. 151; D. Walton (1999a), p. 54; D. Walton (1999b), p. 375를 볼 것.

갑의 대답 ①은 증명부담을 부당하게 을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을은 단순히 X에 개입하기를 거부하면서, X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을이 ~X에 개입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갑의 대답 ①은 을에게 부당하게 증명부담을 지우는 옳지 않은 것이다.[9] 그러나 갑의 대답 ②는 그렇지 않다. X에 ~X보다 더 강한 추정이 주어지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서 X에 대해서 강한 추정이 주어지는 경우, ~X라는 것이 참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X라고 결론 내리는 것, 즉 X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X가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 부담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경우, X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X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옹호의 실패를 절대화하는 오류(fallacy of absolutizing a failure of defense)"를 범하는 것이다.[10] 분명히 X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X는 더욱 옹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X와 ~X 중 어느 하나에 보다 강한 추정이 주어지는 경우는 설득력 있는 무지로부터의 논증과 오류 논증을 구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X와 ~X 어느 쪽에 더 강한 추정이 주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 경우,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암암리에 가정하는 조건적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책상 서랍을 주의 깊게 뒤져보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명함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자. 그 사실로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명함은 내 책상 서랍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논증도 '명함을 서랍에서 발견하지 못

9) 크라브는 이런 이유로 갑의 대답 ①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straw man fallacy)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E. Krabbe (1995), p. 256.

10) Van Eemeren & R. Grootendorst (1987), p. 291.

함'이라는 부정적 증거(무지 전제)로부터 지식 결론을 추론하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이지만, 이 논증에 암암리에 포함된 조건적 전제, "그 명함이 내 책상 서랍에 있다면, 책상 서랍을 주의 깊게 뒤졌을 때 발견되었을 것이다."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이 논증은 설득력을 갖는다.

다시 (논증1)과 (논증2)를 생각해 보자. (논증1)의 조건적 전제는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이 (FBI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을 것이다."이고, (논증2)의 조건적 전제는 "그가 간첩이라면, FBI의 조사에 의해서 그가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다."이다. 누군가가 간첩이라면 면밀한 검사에 의해서 그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간첩이 아닐 경우에 그가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 (논증2)의 조건적 전제는 받아들일 만하지만, (논증1)의 조건적 전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이유로 (논증1)은 오류 논증이고, (논증2)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 탐구에서 부정적 증거의 효력에 의지하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나 역사학에서 '증거 부재로부터의 논증'과 같은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로마에서 훈장 추증과 관련된 앞에서 예로 제시한 논증의 조건적 전제는 "로마에서 훈장 추증의 관습이 있었다면, 로마 역사서 중 어딘가에는 훈장 추증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는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그 논증은 오류 논증이 아니라 받아들일 만한 논증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자. 무지 전제로부터 지식 결론을 이끌어내는 형식의 논증은 모두 무지로부터의 논증이고, 그러한 논증에는 모두 암암리에 조건적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무지로부터의 논증 중에는 오류 논증이 아닌 설득력 있는 논증이 있고, 어떤 논증이 설득력 있는 논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주장되는 결론(X)가 반대 주장(~X)보다 강한 추정이 있는 경우는 강한 추정을 갖는 주장을 결론으로 갖는 논증이 설득력을 갖고,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입증 부담을 갖는다. 둘째, 논증에 암암리에 포함되는 조건적 전제가 받아들일 만한 경우는 그 논증은 설득력 있는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부담을 갖는다.

그렇다면 무지로부터의 논증에 암암리에 포함된 조건적 전제 중 어떤 것은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가의 분명한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적 전제가 받아들일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형식화된 기준은 제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X라면 X가 참임이 알려졌을 것'이라는 (AFI-1')의 조건적 전제는 'X가 거짓이라면 X가 거짓임이 알려졌을 것'이라는 (AFI-2')의 조건적 전제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부정적 사실을 입증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긍정적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 쉽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AFI-1')보다는 (AFI-2')를 제시하는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입증 부담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AFI-2')를 제시하는 사람이 입증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AFI-1')의 논증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증1)은 오류 논증이고, (논증2)와 (논증3) 등은 받아들일 만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텔레파시나 신의 존재와 같은 초경험적 현상이나 초월적 대상에 대한 논증도 "텔레파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 (AFI-2')의 논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입증 부담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그들이 적절하게 입증을 하

지 못하는 한, (AFI-1')의 논증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1]

그러나 (AFI-1')의 조건적 전제가 (AFI-2')의 조건적 전제보다 항상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조건적 수용가능성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나 관습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기도 하고, 특별히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대화의 상황에서 등장할 경우, 그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조건적 전제의 수용가능성은 달라질 수도 있다.

야구 경기 도중 투수 A가 상대팀 타자 B에게 공을 던졌는데, B가 그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경기가 끝난 후, 한 기자가 A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자. 여러 가지 인터뷰를 상황이 가능하겠지만 다음 두 가지 상황만을 고려해 보자.

> (상황1) 기자: B는 당신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맞추었다고 비난하는데, 당신은 정말 B를 맞출 의도를 가지고 투구했는가?
> A: 오늘 경기를 이겨서 다행이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 (상황2) 기자: 당신의 투구에 맞은 B는 부상을 입어서 당분간 경기 출장이 어렵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 A: 야구 경기를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B가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두 개의 인터뷰 상황에서 모두, A는 자신이 B를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즉 A는 자신이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 두 상황으로부터 다

---

11) 21세기와 같은 과학기술 시대의 맥락에서 '텔레파시가 존재한다'는 주장보다는 '텔레파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훨씬 강한 추정이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부담을 갖게 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과 같은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제시되었다고 하자.

(논증4)
1. (무지 전제) A는 자신이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2. (지식 결론) 그러므로 A는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

위 논증은 받아들일 만한가? 첫 번째 인터뷰 상황은, A가 기자로부터 B의 비난 내용을 전해 들었고 기자로부터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는가?"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들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대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A가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고 추론함직하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 (논증4)는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다. 반면에 두 번째 인터뷰 상황은, 기자와 A는 B의 부상에 대한 대화를 했지만 B의 주장(A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이 A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A에게 의도적으로 B를 맞추었는가라는 질문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B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A가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고 추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두 번째 인터뷰 상황이라면, (논증4)의 무지전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식결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요컨대 두 상황 중 첫 번째 상황에서는 (논증4)는 받아들일 만하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상황1)에서 (논증4)를 제시하는 사람의 논증을 좀 더 자세하게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무지 전제) A는 자신이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2. (전제) A는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3. (조건적 전제) A가 B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면, A가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A는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것이다.
4. (지식 결론) 그러므로 A는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

그리고 (상황1)에서 이 논증의 조건적 전제는 받아들일 만하고, 따라서 (상황1)에서 이 논증은 받아들일 만한 설득력 있는 논증이다. 반면에 (상황2)에서 (논증4)를 제시하는 사람의 논증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무지 전제) A는 자신이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2. (조건적 전제) A가 B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면, A는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것이다.
3. (지식 결론) 그러므로 A는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

그런데 이 논증의 조건적 전제가 뜻하는 것은, A가 B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면 A가 자신이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 B와 관련된 대화가 없었다고 해도 A는 자신이 B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강한 조건적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상황2)에서 (논증4)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AFI-1')의 조건적 전제가 (AFI-2')의 조건적 전제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보자. 앞에서 지적했듯이, 무지로부터의 논증의 조건적 전제의 수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원칙이나 관습에 의존하기도 한다. 코피가 무지로부터의 논증 중에서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제시한, 법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논증도 같은 이유로 설득력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A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A는 범인이 아니다."는 논증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만약 무관용의 원칙

(no-tolerance principle)이 법정에서 채택되고 있는 사회라면 이러한 논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12]

사격 연습장에 진열된 총에 탄알이 장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경우 다음 중 어떤 논증이 더 설득력 있는가?

> (논증5)
>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을 향하여 이 총의 방아쇠를 당겨보아도 된다.

> (논증6)
>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을 향하여 이 총의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나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당위 명제를 결론으로 갖는 논증을 실천논증(practical argument)이라고 한다. (논증5)와 (논증6)은 일종의 실천논증이다. 이와 같은 실천논증의 경우, 그 논

12) 위 논증에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는 "A가 죄가 있다면 그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다"라는 조건적 전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쉽게 수용되는 반면, 무관용의 원칙이 법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수용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적 전제보다는 "A가 죄가 없다면 그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다"는 조건적 전제를 수용할 것이다. 한 심사위원은 "무관용의 원칙은 일단 유죄임이 입증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도 처벌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리 무관용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회라 해도 '무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라든가 '무죄라면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무관용의 원칙이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반대로 무죄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원칙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관용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어떤 나라에서 법정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찰과 검찰이 필자가 말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선언하고 마약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입증을 못하는 경우 체포했던 경우가 있다.

증의 수용여부는 사회적 원칙이나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 (논증5)와 (논증6)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원칙은 총기 사용과 관련된 안전 원칙이다. 즉 위험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다. 그 원칙에 따르면, (논증5)는 거부되고, (논증6)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5. 맺음말: GMO 식품 논증, 실천논증으로 다시 보기

앞에서 제기된 GMO 식품을 둘러싼 미국의 논증과 우리나라의 논증을 검토해 보자. 미국 측 논증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조건적 전제는,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면,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측 논증에 포함된 조건적 전제는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다."는 것이다. 이를 과학적 탐구 사례의 경우와 같이 생각하면 미국 측 논증의 조건적 전제가 더 설득력 있고, 따라서 미국 측 논증이 우리나라의 논증보다 더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미국 측 논증의 조건적 전제는 (AFI-1')의 전제이고,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논증의 조건적 전제는 (AFI-2')의 전제여서, 일반적으로 미국 측 논증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MO 식품에 관한 논증의 궁극적 쟁점은 "상품에 원료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이다. 따라서 GMO 식품과 관련된 논증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실천논증이다. 그렇다면 이 실천논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원칙은 무엇인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그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원칙이 제조자의 이익에 앞선다.[13] 그런 의미에서 GMO 식품에 대한 논쟁을 과학적 탐구의 관점에서 미국 측 논증의 조건적 전제가 더 설득력 있으므로 상품에 원료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그 논증은 실천 논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품에 원료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3)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제조자의 책임을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회이다.

참고문헌

김광수 (1995), 『논리와 비판적 사고』 전정판, 서울: 철학과현실사.

박은진, 김희정 (2004),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서울: 아카넷.

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김재홍 역 (1998), 서울: 까치.

Adler, J. (1998), "Arguing from Ignorance", in *Argumentation and Rhetoric: Proceedings of the Second OSSA Conference*, St. Caterines, Ontario.

Copi, I. (1972), *Introduction to Logic*, Fourth ed., New York: Macmillan.

Hamblin, C. L. (1970), *Fallacies*, London: Methuen.

Krabbe, E. (1995), "Appeal to Ignorance", in Hans V. Hansen and R. Pinto (eds.) *Fallacie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adings*, Pennsylvania: Pen State Press, pp. 251-264.

Locke, J. (1975),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P. H. Niddit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Van Eemeren, H. & R. Grootendorst (1987), "Fallacies in Pragma-Dialectical Perspective," *Argumentation* 1, pp. 283-301.

Walton, D. (1996), *Arguments from Ignorance*, Pennsylvania: Penn State Press.

_____. (1999a), "Profiles of Dialogue for Evaluating Arguments from Ignorance", *Argumentation* 13, pp. 53-71.

_____. (1999b), "The Appeal to Ignorance, or *Argumentum ad Ignorantiam*", *Argumentation* 14, pp. 367-377.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Ajou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E-mail: song1959@hanmail.net; hasong@ajou.ac.kr

Is Every Argument from Ignorance Fallacious?

Hasuk Song

The argument from ignorance that knowledge conclusion is derived from ignorance premises is claimed to be fallacious by many logicians such as I. Copi. According to them, some arguments from ignorance which seem to be acceptable are not really the arguments from ignorance. They say that such arguments have implicitly conditional knowledge premise. Against them, I argue that every argument from ignorance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hidden conditional premise, and that every argument from ignorance is not fallacious.

I propose the criterion to judge which argument from ignorance is fallacious and which is persuasive. In particular, I argue that social contexts play a crucial role to judge whether a practical argument is fallacious or not.

Key words: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Lack-of-Knowledge Inference, Ex Silence Argument, Practical Argument, I. Copi, D. Walton